

부산지방법원 2022. 10. 18 선고 2022가단31472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피 고 1. C

2. D

변 론 종 결 2022. 9. 20.

판 결 선 고 2022. 10. 18.

주 문

1. 피고 C와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2분의 1 지분(F의 1/2 지분 중 1/11)에 대하여 2018. 6. 23.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6,528,442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 D와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2분의 1 지분(F의 1/2 지분 중 1/11)에 대하여 2018. 6. 23.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6,528,442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3.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6,528,442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들과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분의 1 지분에 대하여 2018. 6. 23.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3,056,884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56,884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따른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일부 기각 부분

다만,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채무자 E의 상속지분 1/11(F의 1/2 지분 중 2/11)의 1/2씩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E로부터 각각 이 사건 부동산 중 1/22 지분을 취득하였다. 피고들이 각 취득한 지분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가액배상도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들 개별적으로 가액배상을 명한다(다만 가액배상 금액은 원고의 청구취지에 나타난 의사에 따라 원고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한다).

판사 김정우

별지